

국제교류실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국제교류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명칭은 서울신학대학교 ‘국제교류실’이라 한다.

제3조 (위치) 본 국제교류실은 본 대학 내에 둔다.

제4조 (운영 목적) 국제협력 및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유치,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 (실장) 본 국제교류실에 실장을 둔다. 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직원) 본 국제교류실에는 산학협력교수, 사무직원 및 행정조교,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제7조 (사업) 본 국제교류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①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협력 사업
- ② 재학생 유학, 교환학생 등 국제활동 지원
- ③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관리
- ④ 글로벌 교육인프라 구축
- ⑤ 국제화 성과지표 관리
- ⑥ 기타 국제교류 관련 업무

제8조 (운영위원회) ① 본 국제교류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본 국제교류실 실장으로 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중에서 본 국제교류실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본 위원회는 본 국제교류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 1. 기본 계획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4. 자문위원회 등 업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5. 필요 인력에 관한 추천 사항
- ⑤ 학생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 (자문위원회) ① 국제교류실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- ②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장이 소집한다.
- ③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재정) ① 본 국제교류실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② 매 회계연도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 (감사) 본 국제교류실의 감사는 본 대학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국제교류실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